

"우리가 대한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수신 협동조합(제조업) 이사장(회장)
(경유)

제목 2017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·접수 안내

1. 귀 조합(연합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회는 '17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,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『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』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제3차 배정인원 : 9,100명

○ '17년도 총쿼터 : 총42,300명(신규 30,200명, 재입국 12,100명)+α(2,000명)

○ 시기별 배정계획 : 1차(1월) 6,000명+α(1,200명), 2차(4월) 6,000명+α(800명)

3차(7월) 9,100명

4차(10월) 9,100명

2. 배정 일정

○ 신청·접수기간 : '17. 7. 3(월) ~ 7. 17(월)

※ 본회는 '17. 6. 28(수)부터 사전접수 개시

○ 합격업체 발표 : 7. 28(금) 14:00, 16:00

○ 고용허가서 발급 : 8. 3(목)~8. 4(금), 8. 7(일)~8. 8(화)

3. 신청 방법 : 본회(본부, 각 지역본부 및 지부)에 팩스, 우편 신청

*세부내용 붙임 참조(johap.kbiz.or.kr →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)

4. 업무 대행수수료

○ 필수 :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(255,000원), 각종신청대행(61,000원)

- 도입 위탁수수료 인상(40,000원 → 60,000원)

·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현지 외국인력 계약체결 및 출입국지원 비용 등으로 장수

○ 선택 : 통·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(72,000원)

5.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

○ 일 시 : '17. 7. 5(수) 14:00

○ 장 소 :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

*주소 :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(상암동 1622) 중소기업 DMC타워

○ 주요내용 : 제도 개요, 신청 절차 및 방법, 유의사항 등

○ 참가방법 : 아래 참가신청서를 '17.7.3(월)까지 팩스 02)786-2201, 02)786-3717로 송부

※설명회 참석여부는 신규 외국인력 신청과는 무관하며, 외국인 근로자 신청절차,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최

 <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참가 신청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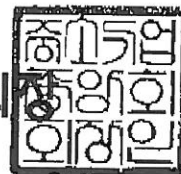
□ 업체명 :

□ 참석자

성명	직책(소속)	연락처	소재지	차량번호

- 붙임 1. 2017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.
 2. 도입위탁 수수료인상 관련 업무지침 안내 1부. 끝.

중소기업중앙회



과장 서병수

부장 전경 06/26
서재윤

수신담당

예산통제

협조자

시행 외국인력지원부-673 (2017.06.26)

접수

우 039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(상암동) 중소기업DMC타워 20층 / www.kbiz.or.kr

전화 02-2124-3284 전송 02-786-2201 / bs3828@kbiz.or.kr / 공개

'17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·접수 안내서

□ 신청절차 [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, 우편 또는 방문 신청]

- 내국인 구인노력(워크넷 www.work.go.kr) 후 신청서류 제출
 -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(14일 이후)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
 - 14일 미경과 업체는 벼룩시장, 교차로 등 일간지 게재 후(7일 이후) 신청 가능(워크넷 병행)

□ 신청서류(fes.kbiz.or.kr → 정보광장 → 각종서식 참조)

-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
- ③ 위임장, 사업자등록증 사본

□ 배정방법 : 점수제

- 기본항목(사업장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, 재고용 만료자수 등)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항목(우수기술사 설치, 사업주 교육이수 등)과 감점항목(출국면기보험 체납, 산재은폐 사업장 등)으로 채점

□ 대상국가 : 15개국 [네팔, 캄보디아, 스리랑카 등(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)]

□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허용 인원

내국인 피보험자 수	외국인 고용 종한도	신규 한도
1명 ~ 5명	5명 이하	3명
6명 ~ 10명	7명 이하	
11명 ~ 30명	10명 이하	4명
31명 ~ 50명	12명 이하	
51명 ~ 100명	15명 이하	5명
101명 ~ 150명	20명 이하	
151명 ~ 200명	25명 이하	6명
201명 ~ 300명	30명 이하	
301명 이상	40명 이하	

※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(3개월 평균)이 1인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

※ 부리산업(부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부리산업증명서 제출시)은 고용허용인원의 20%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,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

-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 TEL : 02-2183-1646 (www.kpic.re.kr)

※ 인력부족(부리산업)업종 및 지방소재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% 추가고용 허용

□ 신청·접수 및 상담처

지 역	전 화	팩 스	지 역	전 화	팩 스
본 부	(02)2124-3283, 3284, 4390, 4391, 4392, 4396	(02)786-2201 (02)786-3717	경기지역본부	(031)259-7815	(031)259-7810
			안산지부	(031)492-2575	(031)492-2594
			강원지역본부	(033)241-0013	(033)241-0015
부산울산지역본부	(051)861-9373	(051)637-2066 (051)637-2067	경기북부지역본부	(031)853-5504	(031)851-2862
대구경북지역본부	(053)524-2507	(053)524-2117 (053)524-2504	충북지역본부	(043)236-7080	(043)236-7084 (043)236-4004
인천지역본부	(032)437-8714	(032)437-8708	전북지역본부	(063)214-6606	(063)214-5166
부천지부	(032)234-2810	(032)234-2813	경남지역본부	(055)212-1175	(055)212-1170
광주전남지역본부	(062)955-9966	(062)951-9966 (062)951-9559			
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	(042)864-0901	(042)864-0902 (042)864-0933	제주지역본부	(064)752-8576	(064)757-5673
천안지부	(041)622-3824	(041)622-3826			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「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

1. 개정 이유

- 외국인 근로자(E-9) 도입시 **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징수('07년부터 4만원 유지)**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(산업인력공단 출연금) 재원으로 사용
- '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 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필요
-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('16.11월)에서 노·사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

2. 주요 내용

- (수수료 인상액) 물가상승율,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도입위탁 수수료를 2만원 인상(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위탁·대행 업무 수수료 기준(제8조 관련) 및 제3호서식 별지 개정)

대상	현행 수수료	개선안
신규 입국자	도입시 40,000원	<u>도입시 60,000원</u>
재입국자	도입시 99,000원	<u>도입시 119,000원</u>

- (적용시기) '17. 7. 1.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기획재정부 협의 완료
- 라. 규 제: 해당 없음